

대구대학교 안전관리계획

2025. 2.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2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5
1. 재난	5
① 자연재난	5
② 사회재난	11
2. 안전사고	15
① 대학 안전사고	15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24
③ 연구실사고	25
3. 감염병 확산	26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6
4. 범죄	29
① 일반범죄	29
② 성범죄	33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36
6. 기타	42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42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43

목 차

Ⅳ.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47
-------------------------------------	----

Ⅴ.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54
------------------------------------	----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76
---------------------------------------	----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77
-----------------------------	----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78
------------------------------------	----

《 관련 매뉴얼 및 지침 》

1. 교육시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교육부, 2025)
 2.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3.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2)
 4.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5.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6.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5)
 7.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8.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2022)
 9.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
 10.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1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12.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13.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여성가족부, 2023)
 1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15.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16.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17.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 ※ (탐재) 학교안전지원시스템(schoolsafe24.or.kr) ⇒ 커뮤니티 ⇒ 교육부정책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안전관리체계의 정착을 통한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목표

안전한 캠퍼스 조성 및 구성원의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담당자의 역량 강화
- 각종 재난대비훈련 통한 구성원의 안전문화 확산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교내·외 안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대학 안전관리체계 강화

□ 목적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비상사태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대구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전 화	053-850-5000	FAX	053-850-5009
홈페이지	www.daegu.ac.kr		
총장	박순진		

□ 교직원 및 학생 현황(2024. 4. 1.자 기준)

재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15,441	1,185	280	16,906	

교직원 (명)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직원	합계
	520	791	369	1680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경산캠퍼스 비상대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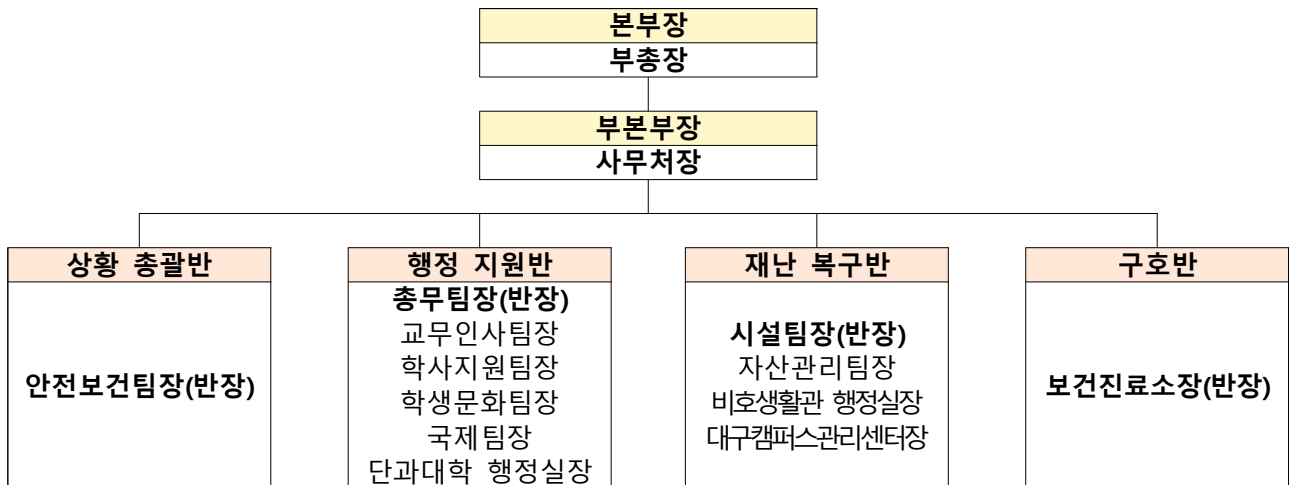
대구캠퍼스 비상대피도

② 조직체계 현황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팀	
1. 재난	자연재난	시설팀	자산관리팀, 안전보건팀
	사회재난	안전보건팀	자산관리팀, 시설팀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문화팀	자산관리팀, 시설팀
	교육시설안전사고	시설팀	안전보건팀
	연구실 사고	안전보건팀	
3. 감염병	코로나 19	보건진료소	자산관리팀
4. 범죄	일반범죄(학교 시설 내 범죄 예방)	자산관리팀	학생문화팀
	성범죄 예방	인권센터	총무팀, 학생문화팀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팀	
6. 기타	비상사태	총무팀	

□ 비상시 재난안전대응 실무 체계도



□ 안전사고 대응 부서 연락처(※ 비상시 직제 체계 보고 및 관계 부서 연락)

소속	구분	담당자	내선
안전보건팀	안전 관리 총괄	팀장	5302
	연구실 안전	***	5303
	소방/재난/산업 안전	***	5304
	감염병/보건	***	4119
시설팀	시설팀 총괄	팀장	5351
	건축	*** / *** / ***	5352, 5355, 5354
	전기, 승강기	*** / *** / ***	5356, 5357, 5358
	기계설비, 도시가스	*** / ***	5362
	외부 시설(조경토목)	***	5363
자산관리팀	자산관리팀 총괄	팀장	5371
	경비, 청소 용역	***	5372
학생문화팀	학생안전 총괄	***	5211
	학생 행사 안전관리	***	5212
(주)SK윌더스	경비 상황실	경비	5005

□ 대외 유관기관 연락처(※ 필요시 대외 유관기관 협조 요청)

분야	기관명	부서	전화번호
사고 대응	경산경찰서	112 치안 종합상황실	053-770-0330
	경산소방서	구조구급과	053-819-6250
시설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88-0300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	053-588-0019
	한국전력공사	경산전력지사	053-810-4229
보건	경산중앙병원	응급실	053-715-0100
	경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053-810-6300
교육시설 안전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11
연구실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7
산업재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053-667-6360
	경산시	안전총괄과	053-810-563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78-8057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시설팀	팀장	***	053-850-5351	주관부서
시설팀	계장	***	053-850-5352	
안전보건팀	팀장	***	053-850-5302	협조부서
안전보건팀	담당	***	053-850-5304	
자산관리팀	팀장	***	053-850-5371	
자산관리팀	계장	***	053-850-5372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3	0	0	0	0	0.60
재산피해(백만원)	15	0	0	0	0	3.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00
	부상	0	0	0	0	0.00
	계	0	0	0	0	0.00

□ 원인분석

○ 사무처 시설팀 자체조사 결과

- 2020년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의 강풍(초속310m/s)이 주요원인으로 영덕시 소재의 연수원 필로티 천장판의 탈락피해와 경산시 소재 캠퍼스내 일부 수목 피해가 발생하여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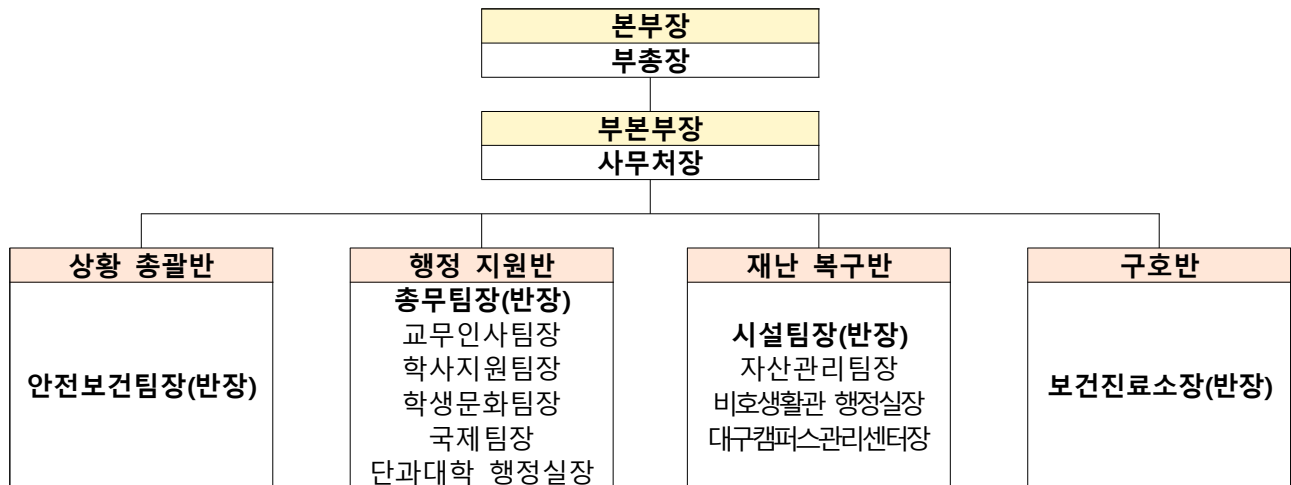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 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대구대학교 재난안전대응 실무 체계도



※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 ❖ **(예방)**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 **(대비)** 재난·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 **(대응)**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 **(복구)**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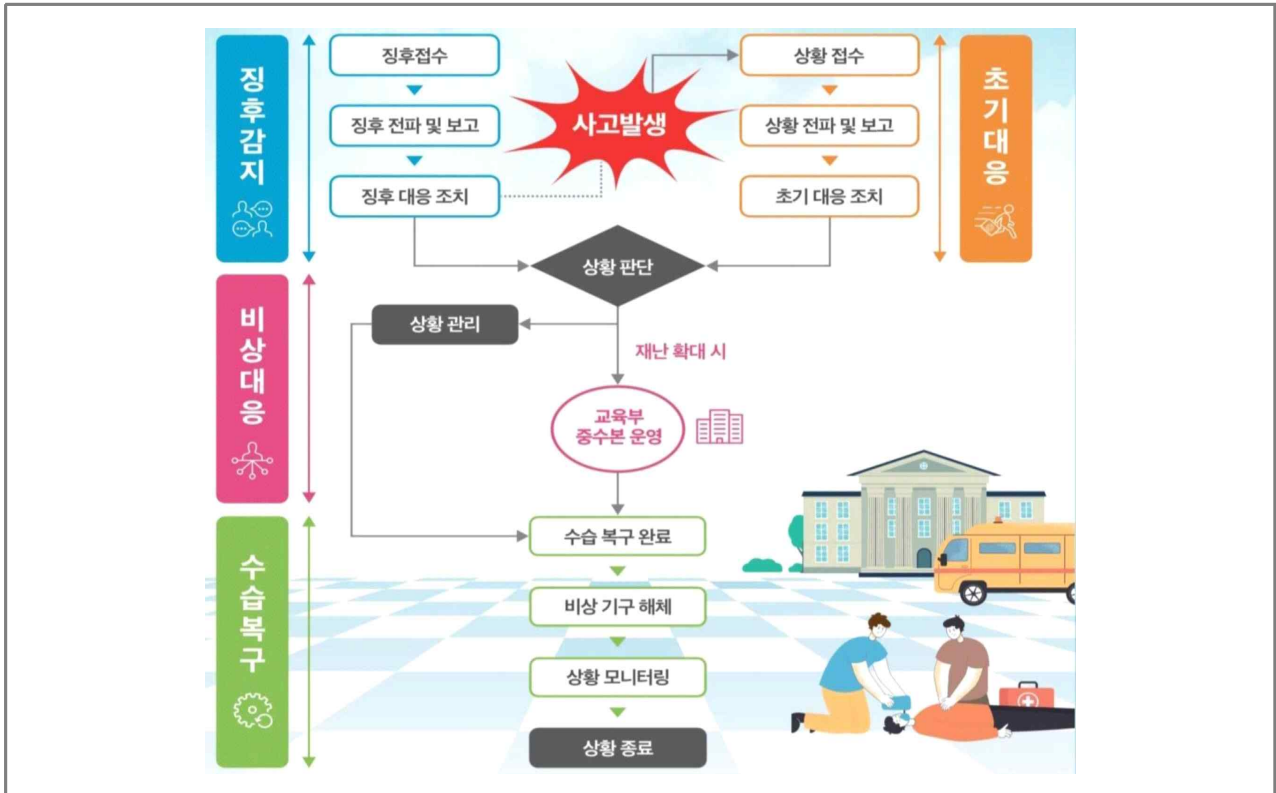
○ 재난안전 비상대책본부 주요 점검사항(태풍, 강풍, 폭우, 폭설)

구분	주요 내용
시설물 점검	시설팀, 각 건물 관리자 점검
	시설물 점검 안내(공문, 게시)
	긴급 문자 안내
중요 결정사항	수업 방법
	교직원 복무(재택근무시 사무실 전화 넘겨두기)
	수업 및 교직원 복무 사항 변경
결정사항 구성원 안내 (①→②→③)	① 긴급 문자 안내(비상대책본부)
	② 비상대책본부 포털 긴급 공지
	② 교무처 학사 안내(공문, 홈페이지): 팀장 전결
	② 사무처 교직원 복무 안내(공문): 팀장 전결
	③ 비상대책본부 결정사항 총장 내부결재
차기 회의	<선택1>차기 회의
	<선택2>결정사항 관계부서 위임
위원 정보 교류	SNS 오픈채팅방 개설

※ 재난안전 비상대책본부 운영 관련 자체평가(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재난안전 담당자	- 업무 절차 미숙 - 상황 보고 및 공유 다소 지연	- 비상대책본부 운영 절차에 관한 매뉴얼화, 담당자의 역량 강화 - 신속한 상황보고 및 의견수렴 ※ 주요 보직자 단독방(학교메신저) 개설 및 운영
구성원 안내	- 문자 발송(긴급SMS) 지연 - 구성원 공지 지연	- 결정 사항의 구두 결정 후 문자 발송 즉시 시행 - 구성원 안내공지는 문자 발송 후 순차 시행 - 재난 관련 긴급안내는 문자 발송 검토 ※ 행정 문서 처리는 결정 사항 우선 시행 후 조치
중요사항 결정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혼란	<결정 방법 택1, 결정(한계) 시간의 설정> -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통한 직접적인 결정 - 관련 부서 의사결정 위임 후 최종 비상대책본부 결과 수합 및 발표
행정처리	해당 부서 공문 안내 지연	- 결정 사항에 대한 구두 보고 후 결정사항 시행 ※ 결정 사항에 대한 공문 안내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진행과 별개로 팀장 전결권 위임
교직원 복무	출근시간 조정에 따른 민원 전화 공백 발생	재택근무 시간 동안은 사무실 전화 넘겨 놓기를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홍보 활동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재난 상황 모니터링,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재난 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및 결과 제출(교육부)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부상자의 병·의원으로 후송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구호활동

■ 보건진료소에서 구호 활동 운영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모니터링 및 평가 >

◎ 모니터링 주요 결정사항

-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방법
- 재난(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현황 측정, 원인 분석 및 평가방안 모색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기 결정
- 사전 재난(사고)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상기 활동에 대한 문서화 작업
-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 모니터링 주요 착안사항

- 각 대학의 지리적·환경적 요인 고려 및 최근 재난(사고)현황 사전 중점 분석
- 각 대학의 재난(사고)관리 정책의 적절성·시의성 및 준수 여부
- 재난(사고) 발생 후, 재난(사고)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

◎ 모니터링 점검 활동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모든 재난(사고)발생 매뉴얼에 반영

◎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사항의 원인 검토·제거, 유사 부적합사항 규명

※ 관련 매뉴얼 : 교육시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교육부, 2025)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긴급 시설보수공사	22	22	16	60	
계	22	22	16	60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안전보건팀	팀장	***	053-850-5302	주관부서
안전보건팀	담당	***	053-850-5304	
시설팀	계장	***	053-850-5352	협조부서
자산관리팀	계장	***	053-850-5372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1	0	2	0	1	0.8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00
	부상	0	0	0	0	0.00
	계	0	0	0	0	0.00

□ 원인분석

- 건물 옥상 폐가구 화재: 옥상 흡연자의 담배 불씨로 인한 화재 발생
- 갈대밭 화재: 담배불씨가 묻혀진 버드나무씨앗세 불어 발화 추정
- 공사 현장 화재: 오일이 묻은 형값에서 장시간 화학반응(발열)으로 인한 발화
- 태양광용 인버터 화재: 태양광용 인버터 시설(옥외) 내 발열로 인한 발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관련 매뉴얼 : 교육시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교육부, 2025),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1.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난방기 안전관리
- 멀티콘센트 안전사용(문어발식 사용금지, 먼지 관리, 전선 상태 확인 등)
- 흡연 장소의 철저한 관리(주변 가연물 보관 금지)
-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취침행위 금지(취사 및 취침 도구 반입 금지)
- 위험물 안전관리: 건물 내 페인트, 신나, 유류 등 위험물 보관 금지

2. 주기적인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실시

3. 화재대응: 건물별 자위소방대 편성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관련 매뉴얼 : 교육시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교육부, 2025)

1. 안전점검추진단 및 안전순찰기동반 구성·운영

주관부서	업무분장
사무처 시설팀	■ 안전점검 총괄·조정 및 계획수립·추진 ■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 사각지대 순찰 시행 ■ 점검결과서 취합 및 확인점검(필요시) ■ 후속 조치 확인
건물 사용부서 (안전관리기관)	■ 각 관할 건물 자체점검 및 안전점검 사각지대 순찰 ■ 후속 조치 확인

2. 안전점검 시행 방법(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합동 점검대상	-	합동점검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전문가 등)	정밀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험 발견시
자체점검 대상	자체점검 (안전관리기관 담당자)	확인점검(위험발견시) (시설부 담당자)	
재해취약시설	주1회 자체점검 (안전관리기관 담당자)	월1회 점검 (시설부 담당자)	

가. 합동점검

- (점검대상) 기숙사 건물 12개동, 지정 실험·실습실, 지정 인공비탈면
- (점검반구성) 최소 구성 인원은 4명 이상
 - 본부 시설부 각 전문분야별 담당자
 - 소방 및 가스분야 외부 전문가
 - 실험·실습실분야 외부 전문가
 - 안전관리기관(건물 사용부서) 시설담당자 또는 부서장
- (점검방법) 합동점검반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

나. 자체점검

- (점검대상) 합동점검대상 시설을 제외한 건물 및 실험·실습실
- (점검반구성) 안전관리기관내 자체점검반의 최소 구성 인원은 3명 이상으로 자율편성
- (점검방법) 자체점검 대상 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지정 점검표에 의거 육안점검 실시

다. 재해취약시설 관리

- (대상) 지정 기숙사 건물, 지정 실험·실습실, 옹벽
- (유지관리 방법) 건물 관리부서에서 재해취약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정기점검 실시

9. 점검결과 조치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 보수, 보강, 사용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 시행
- 점검결과 시설물의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점검 실시

□ 화재 시 행동요령 및 소방안전 정보

○ 화재 행동요령

화재 시 행동요령			
화재 전파	■ 화재 경보장치(발신기)를 작동 ■ 주변에 화재발생 사실을 전파		
화재 신고	■ 119 화재신고 현재 위치 :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000건물		
조기소화	  1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씨를 향한다  3 손잡이를 눌러준다  4 불씨를 쓸고무른다		
	  1 알람 건다  2 연기를 보고 노즐을 향한다  3 불씨를 향한다  4 불씨를 쓸고무른다		
피 난	■ 가까운 비상구를 통해 계단으로 피난		
집 결	■ 피난 완료 후 건물 옆 안전한 장소로 집결		
금지행위	■ 화재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계단 이용) ■ 피난 후 건물로 재진입 금지		
비 상 연 락	경비상황실	캡스	053-850-5005
	소방안전관리자	안전보건팀장	053-850-5302, 5304

○ 소방안전 정보(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안전 상식)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 첫번째 행동요령: 사고를 목격하면 먼저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화기: 안전핀은 바닥에 두고 뽑습니다.(손잡이 꼭 움켜쥐면 빠지지 않습니다.)
- 소화전: 2인 1조로 짝을 이루고 한 사람이 호스 노즐(앞부분)을 잡고, 다른 사람은 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 심폐소생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의식이 돌아오거나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시행합니다.

※ 심장 제세동기는 캅스(053-850-5005)에 연락하면 가져다 줍니다.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건물 구조안전점검	80	12	16	108	시설팀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46	40	40	126	안전보건팀
계	126	52	56	234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학생문화팀	팀장	***	053-850-5211	주관부서
학생문화팀	담당	***	053-850-5214	
자산관리팀	계장	***	053-850-5372	협조부서
취업지원팀	담당	***	053-850-5606	
국제팀	담당	***	053-850-5698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학교 생활, 비교과 활동, 대회 등)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 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학교수업 외, 기타 통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0	0	2	19	24	9.0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3	0.6	0.72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00
	부상	6	6	2	14	10.20
	계	6	6	2	14	10.20

□ 원인분석

- 경영자배상책임보험 조사 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집단연수 감소,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 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학생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체육활동과 관련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육 관련 행사시 안전교육과 경기 규칙의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에 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딛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내 교통안전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요원 운영

-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 마련·시행

-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모빌리티, 자전거 등)와 보행자,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안전을 위한 전용도로와 분리시설 마련
- 대학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예방대책 수립
-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내 통행 속도는 20km/h 이하로 제한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
-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짐
-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충전이 가능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장소 및 방법, 안전에 관한 대책 수립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전용, 공용 주차공간 마련
- 주차 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캠페인
-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조사 체계 구축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관·조직의 장 또는 대표는 행사계획 수립 시 「행사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작 일 2주 전까지 행사 승인부서(학생문화팀)에 제출
- 대규모 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승인요청서」와 함께 행사 승인부서에 제출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대책 마련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기구와 장비 등의 안전지침 마련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점검
-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수 관련 안전 수칙 마련
 - 1)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 확인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 안전 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결과 확인
 - 숙박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여부
 - 2)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확인, 유효기간, 보상범위 등 확인
 - 숙박과 관련된 계약서 작성
 - 3) 숙박시설 계약 시 미등록 숙박업소, 무허가건축물 이용 자제
 - 수련시설 안전정보: 학교안전정보센터(<http://www.schoolsafe.kr>)

○ 학생 집단활동 안전(2024년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준수)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집단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기획자, 인솔자,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
-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

- 보험가입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재확인
-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로, 인근 소방서, 병원, 지자체 등과의 연락 체계)
-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 숙박 및 식사 안전
- 참가 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1)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포함)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실시
 - 2) 사전 답사 결과 전반을 사전교육시 충분히 전달
 - 3) 행사장 시설 및 대피로 등 관련 정보 제공
 - 4) 개인 행동 금지 포함 행동 수칙 안내
 - 5) 학생 자가 차량 운행 금지
- 행사 중 안전계획 수립
 - 1) 반드시 행사계획서에 따라 진행
 - 2) 건전한 음주 생활 및 문화 홍보(과도한 음주 절대 금지)
 - 3) 단과대학 및 학과 교수, 직원, 학생 간의 온라인 소통 채널 구축
 - 4) 교수, 직원 동행 및 철저한 입장지도
 - 5) 열차려, 성폭력(성희롱), 신체·언어적 가혹행위 금지 및 학생관리
 - 6) 학생회 내부 안전관리 요원 지정(자율적 통제 권장)
 - 7) 구급약 상시 비치

- 각종 행사별 세부 안전 수칙

구 분	안전 수칙	비고
신입생 예비대학	• 입학 전 행사 진행은 대학(단과대학, 학과) 주관으로 할 것 • 신입생 학부모에게 행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전달 •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음주, 성폭력(성희롱), 신체·언어적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행위 금지 • 교통수단 및 운전자, 이동 동선 안전 확인 • 행사 장소 확인 및 점검 •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설계 및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응급차량, 인력 배치 및 비상약품 구비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과 협조 체계 구축 • 과도한 음주 행위 절대 금지 • 어학, 컴퓨터 교육관련 물품 판매로 인한 신입생 피해 주의 당부	대학, 단과대학, 학과 주관
축제	• 학과장, 주임교수 등 반드시 지도교수 지도하에 먹거리촌 실시 • 무대 시설 사전 및 수시 점검 실시 • 음주운전 절대 금지 • 음주강요, 안전사고, 성폭력(성희롱), 신체·언어적 가혹행위, 군대식 열차려 등 인권침해 행위 금지 • 소란행위, 음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주 축제문화 형성을 위해 먹거리촌 운영 제한 시간 지정 • 쓰레기는 지정장소에 배출 • 교내 무단 취침 금지(야간 취사 행위 포함) • 안전한 귀가 조치 및 확인 • 관련 보험 가입	대학, 단과대학, 학과 주관

구 분	안전 수칙	비고
신입생 환영회 체육대회	· 학과장, 주임교수 등 반드시 지도교수 지도하에 실시 · 강제참석 및 부당한 참가비 징수 금지 · 행사 진행 간 음주강요, 안전사고, 성폭력(성희롱), 신체·언어적 가혹행위, 군대식 열차려 등 인권침해 행위 금지 · 비상약품 항시 구비	대학, 단과대학, 학과 주관
M.T, 산업시찰 등 교외행사	· 교직원 동행 및 임장지도 실시 · 사전답사 및 행사 전 안전교육 실시 · 강제참석 및 부당한 참가비, 불참비 징수 금지 · 행사 진행간 음주강요, 안전사고, 성폭력(성희롱), 신체·언어적 가혹행위, 군대식 열차려 등 인권침해 행위 금지 · 숙박시설 점검(안전점검 결과, 보험가입 여부 확인) · 교통수단 및 운전자, 이동 동선 안전 확인 · 단체활동에 대한 별도의 보험 가입 · 행사장 도착시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대학, 단과대학, 학과 주관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학과의 부서장은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의 방안을 포함한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부서(학과는 단과대학, 기관은 학생지원부)에 제출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 (상해보험) 대학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 상해+후유장애+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례비+상조지원 등 보상

❖ (산재보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노동부고시) 개정('18.9.11)

< 참여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부고시) >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범위	▶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 4년제 및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상 실습학기제 등 포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대상	▶ 약 6만명	▶ 약 15만명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실습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건·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학생회관, 식당, 사무실/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관,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도 및 대응 체계도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사고등급평가 매트릭스 >

교육활동 중 교육활동 외 학교관련 시설에 학교현장에서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극심 ▪ (상황) 정상적인 학교운영 중단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즉각적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대규모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중대 ▪ (상황) 학교운영에 전반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많은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계	경계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중간 ▪ (상황) 학교운영의 중요 기능의 일시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계	경계	경계	경계	심각	심각
	경미 ▪ (상황) 단순조치에 의한 학교운영 정상화가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발생 ▪ (규모) 몇몇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주의	주의	주의	경계	경계	심각
	사소 ▪ (상황) 학교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미한 지장 및(또는) 교직원의 개입과 학교장 보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1명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관심	관심	주의	경계	경계	심각
	없음 ▪ (상황) 학교운영에 영향이 없고, 112 또는 119 신고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		관심	주의	경계	경계	심각
사고 등급평가 매트릭스		없음	사소	경미	중간	중대	극심
		학생 또는 교직원 안전에 대한 영향 없음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손상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손상	통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손상	입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손상	사망, 영구장애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광범위한 의료지원 필요
요인 1. 학생 및(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재난·안전 사고

-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부서장,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장, 부서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관련 매뉴얼: [별첨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4)
[별첨8]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경영자배상책임보험	28	30	25	83	학생문화팀
학생안전지원사업	40	40	1.5	81.5	학생문화팀
캠퍼스안전지킴이 운영	45	45	15	105	학생문화팀
현장실습 보험 가입비	3	4	1	8	취업지원팀
계	116	119	42.5	277.5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시설팀	팀장	***	053-850-5351	주관부서
시설팀	계장	***	053-850-5352	
안전보건팀	담당	***	053-850-5304	협조부서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최근5년간 피해현황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 관련 매뉴얼 :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2022)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 관련 매뉴얼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교육시설안전인증	25	35	132	192	
석면건축물 농도측정	15	15	0	30	
계	40	40	132	222	

3 연구실 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안전보건팀	팀장	***	053-850-5302	주관부서
안전보건팀	과장	***	053-850-5303	
안전보건팀	담당	***	053-850-5304	협조부서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0	0	1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17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1	0	0
	계	0	0	1	0	0

□ 원인분석

- 생물체 해부 실험 중 보호장구(라텍스장갑)를 착용하였지만, 부주의로 손가락을 베임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관련 매뉴얼 :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안전교육 및 회의비	2	2	1	5	
건강검진비	23	10	10	43	
상해보험료	16	10	10	36	
안전진단비	10	10	10	30	
안전시설	90	58	34	182	
기계기구	33	50	20	103	
폐기물	17.2	17.2	25	59.4	
계	191.2	157.2	110	458.4	

3. 감염병 확산

※ 교육부 등 관련 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라 미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교육부의 매뉴얼을 기준으로 함

1.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보건진료소	소장	***	053-850-5302	주관부서
보건진료소	담당	***	053-850-4119	
자산관리팀	계장	***	053-850-5372	협조부서

□ 위험요인

- **(코로나-19)**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 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발생 및 지역간·계층간 학습격차 심화

□ 피해현황

구분	2020	2021	2022	평균
감염자 수	29	60	3,135	1,074.67
인명피해(사망)	0	0	0	0.00

□ 원인분석

- **질병관리청, 경산시보건소 결과**
 - 대부분의 방역조치는 해제되었으나 그간의 코로나19 발생과 대응 상황을 되돌아 보고 잘한점과 보완할 점을 찾아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염병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학내 관리체계)**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보건진료소 등이 감염병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학외 협조체계)**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감염병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시 비상대응조치(업무연속성 계획)

< 대구대학교 업무연속성(BCP) 계획 >

BCP 발동 기준			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	
①전체 방역상황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학사	• 사전지정된 필수 수업은 대면 진행 • 그 외 수업 비대면 전환
②학내 감염상황	교내 확진자 비율 5% 내외 (1주 기준)		교내 주요 기능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권장 (2/3 이하 출근) • 학내·외 행사 연기, 교육활동 외 학내 잔류시간 최소화
			시설 이용	•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
①전체 방역상황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학사	• 전면 비대면 전환 가능
②학내 감염상황	교내 확진자 비율 10% 내외 (1주 기준)		교내 주요 기능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 교내·외 행사 금지
			시설 이용	• 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 •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소독)**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대학 시설물 **일상 소독 강화**
- (환기)**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 (방역물품)** 대학 내 시설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

(학교 행사)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사업	10	0	0	10	
보건진료소 운영	9	10	10	29	
계	19	10	10	39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산관리팀	팀장	***	053-850-5371	주관부서
자산관리팀	담당	***	053-850-5372	
학생문화팀	담당	***	053-850-5212	협조부서
총무팀	과장	***	053-850-5312	
인권센터	담당	***	053-850-5417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 수	5	3	1	1	0	2.00
피해자 수	5	3	1	1	0	2.00

□ 원인분석

○ DU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비방, 모욕, 협박 등 언어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법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건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 관련 매뉴얼: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언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이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
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별첨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4	합계	
캠퍼스 경비 용역	1,086	1,151	1206	3,443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5.2	6.2	6.2	17.6	
계	1,091.2	1,157.2	1,212.2	3,460.6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인권센터	센터장	***	053-850-6186	주관부서
인권센터	상담교수	***	053-850-5418	
인권센터	실장	***	053-850-5411	
인권센터	담당	***	053-850-5417	
학생문화팀	담당	***	053-850-5212	협조부서
총무팀	과장	***	053-850-5312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2	3	3	4	1	2.60
	성폭력	0	0	1	0	0	0.20
	계	2	3	4	4	1	2.80
피해자 수	성희롱	2	3	3	4	1	2.60
	성폭력	0	0	1	0	0	0.20
	계	2	3	4	4	1	2.80

□ 원인분석

○ DU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 성폭력 피해현황 보다 성추행, 성희롱 피해현황이 더 많으므로 각별히 성추행, 성희롱에 관한 교육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등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관련 매뉴얼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 2023)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1.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기관명), '21.○.○.(작성일)〉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000학교 / 00시 00구청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가해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O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특이사항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인가				O
	피해자가 다수인가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일)				
사건개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관 조치사항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인권침해 신고 조사처리	4	4	4	12	
인권침해, 성폭력 등 예방 홍보 및 활동	1	1	1	3	
계	5	5	5	11	

□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단계 구분

-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 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안전보건팀	팀장	***	053-850-5302	주관부서
안전보건팀	담당	***	053-850-5304	주관부서

□ 위험요인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0	1	0	1	0	0.4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00
	부상	0	1	0	1	0.40
	계	0	0	0	0	0.00

□ 원인분석

- 2023 짐을 들고 비상계단을 내려오다 발목부위 골절으로 추가 안전교육 실시, 작업전 점검 강화
- 2021 페인트 작업 중 부상(실족)으로 안전교육 실시, 추가 안전장비 확보실시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 업무 연간 추진일정

항목	추진일정				성과지표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안전보건교육(정기)	○	○	○	○	6시간/분기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개	별		16시간/년간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		○		1회/년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	○	○	○	1회/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	○	○	1회/월	
보건 상담 (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	○	○	○	○	1회/월	
분기(반기) 안전보건 업무 이행 점검	○	○	○	○	1회/분기(반기)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자체평가		○		○	1회/반기	
비상시 대응 훈련	○		○		1회/반기	
안전보건수준평가	○		○		1회/반기	
일반/특수 건강검진				○	1회/년	

-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주요 업무 계획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위험성평가 실시	• 대학 내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1회/년, 수시
관리감독자의 조치	•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 시행	수시
안전보건업무 이행 점검	• 안전보건팀 주관 부서별 안전보건업무 이행 실태 점검 • 근로자의 유해위험 요인 의견 수렴 및 인터뷰	1회/분기
근골격계부담작업 조사	• 근로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	1회/3년 수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 대학 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1분기 시행
(도급)작업장 수시점검	• 도급인과 수급인의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상태 공동 점검	1회/주
(도급)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통한 근로자 안전보건 및 작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논의	1회/월
(도급)합동 안전보건 점검	•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이행 의무 확인	1회/분기
(도급)안전보건수준 평가	•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에 관한 평가	1회/반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역할 및 책임

구분	선임	역할 및 책임
경영책임자	이사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인 전담 조직		• 영광학원 산하 조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총장	• 대학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업무수행 (안전보건 팀)	• 안전보건관리 업무 인력 배치, 예산 확보 및 집행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안전관리자	***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지도 및 조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보건 전문기관(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지도 및 조언
관리감독자	부서장 (팀/실장)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등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 및 조치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보고, 초기대응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대상근로자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육 실시	서류보존
- 전직원 - 관리감독자 - 신규 입사자	⇒ 위탁/집체/현장/인터넷	⇒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측정대상물질 확인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
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확인)	⇒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	⇒ 서류의 보존기한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애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 • 검진 대상자 독려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서류보존
⇒ •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 •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 •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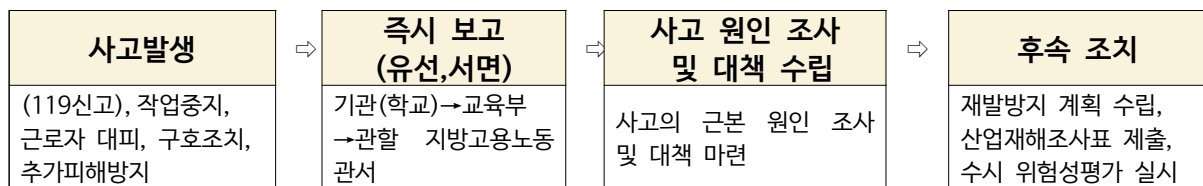
② 대응 · 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대학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대학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대학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 · 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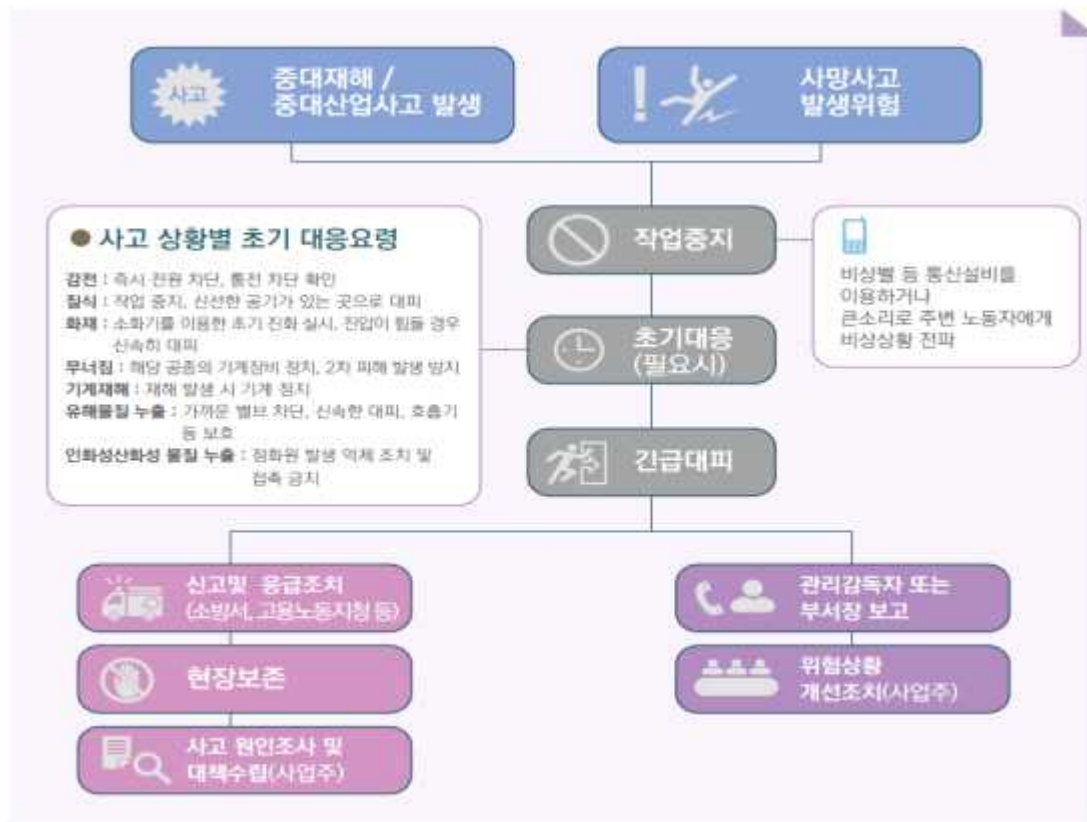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시 대응 절차도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3	3	9	
안전관리사업	7	7	7	21	
계	10	10	10	30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무팀	팀장	***	053-850-5311	주관부서
총무팀	담당	***	053-850-5314	
시설팀	팀장	***	053-850-5351	협조부서
자산관리팀	팀장	***	053-850-5371	
안전보건팀	팀장	***	053-850-5302	
디지털혁신팀	팀장	***	053-850-5511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 피해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총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총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 관련 매뉴얼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비예산으로 추진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화재보험		DB손해보험(경산, 영덕) 한국교육시설안전원(대구)
현장실습 보험	상해보험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하이학교 종합보험	2021-10-01 2022-09-30	1.664	17,728	29,515	0	0	0	0	신입생예비대학 포함
2023	하이학교 종합보험	2022-10-01 2023-09-30	1.766	16,178	28,586	2	209	0	0	신입생예비대학 포함
2024	학교안전공 제중앙회	2023-10-01 2024-09-30	1.156	18,757	21,700	23	23,934	2	292	신입생예비대학 포함
2025	학교안전공 제중앙회	2024-10-01 2025-09-30	1.340	18,519	24,831	4	2,845	1	645	신입생예비대학 포함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100,000	5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0	5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2,000	2,000	
신입생(OT)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3,000	3,000	
	사망,후유장해	300,000	0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 · 폭발 · 붕괴·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화재보험 (경산, 영덕)	2023-09-01 2024-08-31	46,442	373,108	46,673	0	0	0	0	
	화재보험 (대구)	2023-01-01 2023-12-31	2,922	21,231	3,347	0	0	0	0	
2024	화재보험 (경산, 영덕)	2024-09-01 2025-08-31	49,271	373,108	49,271	0	0	0	0	
	화재보험 (대구)	2024-01-01 2024-12-31	2,922	21,231	3,347	0	0	0	0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재물위험	0	1,000,000	사고시 손해액 배상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	0	1,000,000	사고시 손해액 배상
신체배상(사망)	150,000	0	
신체배상(부상)	30,000	0	
후유장애	15,000	0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2023-02-01 2024-01-31	1.77	7,255	12,855	0	0	0	0	
2024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2024-02-01 2025-01-31	1.59	6,043	9,617	0	0	0	0	
2025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2024-02-01 2025-01-31	1.72	6186	10,686	0	0	0	0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의료비	100,000	2,000,000	
입원일당	50	50	
장의비	10,000	10,000	
사망	200,000	200,000	

5.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조직현황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학생생활상담센터	센터장	***	053-850-6367	주관부서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교수	***	053-850-5236	
학생생활상담센터	담당	***	053-850-5239	
학생문화팀	담당	***	053-850-5212	협조부서
총무팀	과장	***	053-850-5312	

□ 지원내용

구분	추진내용
개인상담	▪ 학교구성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위기돌봄 프로그램 (DU-SAFE)	▪ 본 센터 위기대응 시스템에 기반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심리지원 특별 프로그램 실시 - 재난위기(안전사고) 발생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지원 특별프로그램 실시 가능 - ‘재난위기 상황’ 발생 시 수일 내로 관련자들을 위한 심리지원 특별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음. - 심리지원 특별 프로그램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형태로 진행 * 프로그램 진행 중 위기도가 확인되었을 경우 매뉴얼에 따라 위기도를 평가하고 개입

1. 재난안전훈련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조직현황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안전보건팀	팀장	***	053-850-5302	주관부서
안전보건팀	담당	***	053-850-5304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인원(명)	예산(천원)
교직원 재난대비 소방훈련	24. 3. 11	264	0
기숙사 화재대피 소방훈련	24. 3. 13. ~ 3. 21	257	1,000
교직원 재난대비 소방훈련	24. 6. 27.	48	0
가을축제 화재예방 교육	24. 9. 24	22	0
창파도서관 화재대응 훈련	24. 9. 26	60	100
소방서 합동 훈련	24. 10. 28 ~ 10. 30.	30	3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재난대비 대피 소방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 화재 대응 훈련, 재난 분야별 대학 맞춤형 대응 훈련 수행 -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교육훈련 대상: 학생, 교직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재난대비 대피 소방훈련	2회/년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 화재 대응 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년	- 재난 분야별 대학 맞춤형 대응 훈련 수행(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안전점검의 날 시행	매월	- 대학 시설물 자율 안전점검 - 대학 재난 안전관리체계 점검 - 구성원 안전정보 공유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 ■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학생문화팀	팀장	***	053-850-5211	주관부서
학생문화팀	담당	***	053-850-5212	
자산관리팀	계장	***	053-850-5372	협조부서
취업지원팀	담당	***	053-850-5606	
국제팀	담당	***	053-850-5696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인원		비고 (주관부서)
		학생	교직원	
2024학년도 신입생 환영주간	2024.03.04.	4,000		학생문화팀
2024학년도 가을축제 안전 지킴이 교육	2024.09.23.	39	2	학생문화팀
2024학년도 중앙 학생자치기구 간담회(F.G.I) 실시	상시	20	4	학생문화팀
2024학년도 서편 단과대학 안전 지킴이 교육	2024.11.06.	12	2	학생문화팀
2024학년도 성산리더십 간담회	2025.01.17.	30	2	학생문화팀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캠퍼스 안전 체험 교육	• 대학 캠퍼스 내 구성원들의 안전 교육 실시 • 교내외 근로장학생 안전교육 실시 • 학생회 간부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학생 행사 진행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안전교육 필히 실시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확보 매뉴얼에 근거하여 대학 자체 안전관리 규정(매뉴얼)을 제작·배포 •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 캠페인 실시 • 신입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안전 교육 실시 •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대피로 확보 등) 교육	• 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공연안전 교육 실시 • 체육대회 등과 외부활동은 사전 교육 실시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천원)
학생(신입생)	2월	1	4,000명	
학생간부 교육	매월	1	20명 내외	
학생(근로 안전교육)	3, 9월	1	1000명	
신입생 환영주간	3월	1	4000명 내외	
학생(축제)	5, 10월	1	7000명 내외	
학생, 교직원(폭력예방교육)	4~12월	1	12,000명	
성인지적 폭력예방 교육	매학기	1	800명	8,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캠퍼스 안전 체험 교육	• 대학 캠퍼스 내 구성원들의 안전 체험 교육 실시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확보 매뉴얼에 근거하여 대학 자체 안전관리 규정(매뉴얼)을 제작·배포 •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 캠페인 실시 • 신입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안전교육 실시 • 외부 활동시 안전 교육 실시(농촌봉사활동, 실험, 실습) • 캠퍼스 소방교육(기숙사 등) •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 교육	• 대학 내 공연, 축제 행사 시설 이용시 공연안전 교육 의무 실시 • 체육대회 등과 외부활동은 사전 교육 실시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안전보건팀	팀장	***	053-850-5302	주관부서
안전보건팀	담당	***	053-850-5304	주관부서
근로자 소속 부서				협조부서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관리감독자)	'24.3. ~ '25.2.	8시간	10명	2,500,000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관리감독자	'25.3. ~ '26.2.	16	10명	2,000,000원
현업근로자	'25.3. ~ '26.2.	6	75명	500,000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안전보건팀	팀장	***	053-850-5302	주관부서
안전보건팀	과장	***	053-850-5303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1학기 안전교육	신규,정규,특별	1	2,784	-
2학기 안전교육	신규,정규,특별	1	3,023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안전교육	■ 연구실 안전교육(학기당 신규,정규,특별교육)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1학기 안전교육	신규,정규,특별	1	해당인원조사	-
2학기 안전교육	신규,정규,특별	1	해당인원조사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안전교육	■ 연구실 안전교육(학기당 신규,정규,특별교육)

5.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인권센터	센터장	***	053-850-6186	주관부서
인권센터	상담교수	***	053-850-5418	
인권센터	실장	***	053-850-5411	
인권센터	담당	***	053-850-5417	
학생문화팀	담당	***	053-850-5212	협조부서
총무팀	과장	***	053-850-5312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대상
폭력예방교육(온라인)	2024.4~2024.12	4시간	학생, 교직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 인권,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대상
폭력예방 교육(온라인)	2025. 4. ~ 2025. 12.	4시간	학생, 교직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 인권,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6.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무팀	팀장	***	053-850-5311	주관부서
총무팀	담당	***	053-850-5314	
시설팀	팀장	***	053-850-5351	협조부서
자산관리팀	팀장	***	053-850-5371	
안전보건팀	팀장	***	053-850-5302	
디지털혁신팀	팀장	***	053-850-5511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2024. 2. 10.	6	8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훈련	비상사태 발생 시 비밀 및 중요문서, 개인정보 안전 반출 및 파기 훈련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교직원	비상대비훈련	1	8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훈련	비상사태 발생 시 비밀 및 중요문서, 개인정보 안전 반출 및 파기 훈련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재난 및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경산경찰서	053-770-0330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산소방서	053-819-6250		구조구급과
한국전기안전공사	053-288-0300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53-588-0019		대구광역시본부
한국전력공사	053-810-4229		경산전력지사
경산중앙병원	053-715-0100		응급실
경산시 보건소	053-810-6300		보건행정과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부서명	전 화 번 호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시설팀	053-850-5351	
	총무팀	053-850-5311	
	자산관리팀	053-850-5371	
	안전보건팀	053-850-5302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교육부	044-203-7146		
경산시	053-810-5383		
경산시 보건소	053-810-6314		선별진료소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보건진료소	053-850-4119		대구대학교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법무부 스마일센터(대구)	053-745-1295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2-596-1295	-	
진량파출소	053-853-0112	-	
대구여성회	053-421-6758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부서명	전화번호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경비상황실	053-850-5005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경산소방서 진량119안전센터	053-856-0119		
경산진량보건지소	053-852-8328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054-338-7575		응급실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부서명	전화번호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안전보건팀	053-850-5302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교육부	044-203-6188		
경산시청	053-810-5574		
경산소방서	053-811-1119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부서명	전화번호	
통합상황실	총무팀	053-850-5311	
	시설팀	053-850-5351	
	자산관리팀	053-850-5371	
	안전보건팀	053-850-5302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시설팀	팀장	***	주관부서
		시설팀	담당	***	
		안전보건팀	팀장	***	협조부서
		안전보건팀	담당	***	
		자산관리팀	팀장	***	
		자산관리팀	계장	***	
	② 사회재난	안전보건팀	팀장	***	주관부서
		안전보건팀	담당	***	
		시설팀	계장	***	협조부서
		자산관리팀	계장	***	
2. 안전 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학생문화팀	팀장	***	주관부서
		학생문화팀	담당	***	
		자산관리팀	계장	***	협조부서
		취업지원팀	담당	***	
		국제팀	담당	***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시설팀	팀장	***	주관부서
		시설팀	담당	***	
		안전보건팀	담당	***	협조부서
	③ 연구실사고	안전보건팀	팀장	***	주관부서
		안전보건팀	과장	***	
		안전보건팀	담당	***	
3. 감염병 확산	① 감염병	보건진료소	소장	***	주관부서
		보건진료소	담당	***	
		자산관리팀	계장	***	협조부서
4. 범죄	① 일반범죄	자산관리팀	팀장	***	주관부서
		자산관리팀	계장	***	
		학생문화팀	담당	***	협조부서
		총무팀	과장	***	
		인권센터	담당	***	
	② 성범죄	인권센터	센터장	***	주관부서
		인권센터	상담교수	***	
		인권센터	실장	***	
		인권센터	담당	***	
		학생문화팀	담당	***	협조부서
		총무팀	과장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안전보건팀	팀장	***	주관부서
	② 중대 재해	총무팀	담당	***	협조부서
6. 기타	① 비상 사태	총무팀	팀장	***	주관부서
		총무팀	담당	***	
		시설팀	팀장	***	협조부서
		자산관리팀	팀장	***	
		안전보건팀	팀장	***	
		디지털혁신팀	팀장	***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3	0	0	0	0	0.6	
		재산피해(백만원)	15	0	0	0	0	3.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0
			부상	0	0	0	0	0	0.0
			계	0	0	0	0	0	0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1	0	2	0	1	0.5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0
			부상	0	0	0	0	0	0.0
			계	0	0	0	0	0	0.0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0	0	2	19	24	7.83	
		재산피해(백만원)	0	0	0	3	0.6	0.72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00
			부상	6	6	2	14	23	10.20
			계	6	6	2	14	23	10.20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0	0	1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17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1	0	0	0
			계	0	0	1	0	0	0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	29	60	3,135	-	-	664.8	
		인명피해(사망)	0	0	0	-	-	0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5	3	1	1	0	2.2	
		피해자 수	5	3	1	1	0	2.2	
	② 성범죄	발생건 수	2	3	4	4	1	3.4	
		피해자 수	2	3	4	4	1	3.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0	1	0	1	0	0.6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1	0	1	0	0.6
			계	0	1	0	1	0	0.6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긴급 시설보수공사	22	22	16	60	
		계	22	22	16	60	
	② 사회재난	건물 구조안전점검	80	12	16	108	
		소방시설 점검,유지관리	46	40	40	126	
		계	126	52	56	234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경영자배상책임보험	28	30	25	83	
		학생안전지원사업	40	40	1.5	81.5	
		캠퍼스안전지킴이 운영	45	45	15	105	
		현장실습 보험 가입비	3	4	1	8	
		계	116	119	42.5	277.5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교육시설안전인증	25	35	132	192	
		석면건축물 농도측정	15	15	0	30	
		계	40	40	132	222	
	③ 연구실안전사고	안전교육 및 회의비	2	2	1	5	
		건강검진비	23	10	10	43	
		상해보험료	16	10	10	36	
		안전진단비	10	10	10	30	
		안전시설	90	58	34	182	
		기계기구	33	50	20	103	
		폐기물	17.2	17.2	25	59.4	
		계	191.2	157.2	110	458.4	
3. 감염병 확산	①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사업	10	0	0	10	
		보건진료소 운영	9	10	10	29	
		계	19	10	10	39	
4. 범죄	① 일반범죄	캡스 경비용역	1,086	1,151	1206	1,086	
		인권침해 폭력 등 예방 홍보 및 활동	5.2	6.2	6.2	17.6	
		계	1,091.2	1,157.2	1,212.2	3,460.6	
	② 성범죄	인권침해 신고 조사처리	4	4	4	4	
		인권침해 성폭력 등 예방 홍보 및 활동	1	1	1	1	
		계	5	5	5	11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안전보건 교육사업	3	3	3	9	
		안전관리사업	7	7	7	21	
	② 중대재해	계	10	10	10	30	
6. 기타	① 비상사태	비예산으로 추진					